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회 의 명	2022학년도 제2회 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일시	2022년 07월 11일 10:30~11:30
회의장소	사무실
참석대상	• 위원장: 박** • 외부위원: 김**, 이민**, 조수**, 이** • 내부위원: 정**, 김** 장** • 서기: 장**

◆ 회의 안건

▼ ^의 1 ¹ 1 ¹ 1 ¹						
1. 유치원 규칙 개정안의 심의 ·자문 2. 유치원 보수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 심의 ·자문 3.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및 영위원회 정수 재구성 심의 ·자문 4. 학사 일정 조정						
◆ 회의 내용 및 결과 요약 1. 유치원 규칙 개정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유치원규칙은 본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치원규칙은 장송 출칙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덕일성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급편제.원아정원.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M4조(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본 유치원의 7학급으로 편제하며, 원아의 정원은 175명으로 하며, 전라북도교육정의 유치원 학 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제4조(교육연한) 우리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교육연한은 1~3년 으로 한다. 다마,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한) 본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우리 유치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학기) 본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우리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제7조(휴업일)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 및 겨울 방학 3. 개교기념일 등 ② 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년 180일 이상으로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③ 유치원의 장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자체 없이 관할정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 3. 하계휴가					
3. 개교기업월 등 (2. 기교기업원 등 (2. 기교기업 및 제3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휴업일은 제2호의 유업일은 대년 180일 이상으로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3. 유지원의 장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지체 없이 과활정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6. 학년말 휴가 7. 기타 임시 휴업일(원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 3 장 교육과정· 내용,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8조(굕육과정·내용)	제7조(학급편제) 우리 유치원의 학급은 7학급으로 구성한다. 제8조(학급정원) 우리 유치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					
제8조(교육과정·내용)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고시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르며,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저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계획을 그거로 본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한다.	당 유아수용지표에 따른다.					
제9조(수업일수) ① 본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유치원의 장이 청하다. ②유치원의 장은 교육장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유영방침)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1일 4시간의 기본교육과정, 1일 7시간 이상의 방과후과정을 희망하는 유아에 한하여 운영한다.						
제11조(현장학습) ①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이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현장체험학습은 테마 중심체험학습, 활동중심체험학습, 부모 임과 함께하는 호도방문 체험 학급, 동·농간 교류학습, 가족 동반체험, 흙 사랑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친 한다. ③현장체험학습을 실시에 테마 중심학습은 유치원 교육 유영과 유치원의 형편에 따라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장이 이를 따로 정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고시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르며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우영 지침 전주교육지 원청 유아교육계획을 근거로 본원의 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 용을 선정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한 다.

제 4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퇴학.수료 및 졸업

- 제12조(입학)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②본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본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④본 유지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 제13조(재입학)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을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시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편입학) ① 본 유치원에 편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전학) 유치원 원아가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는 전학을 허가한다.
- 제16조(퇴원명령)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출석정지 (오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원이 (2) 유지원 전반적인 교과 운영에 필요이상의 요구나 간섭으로 (3) 퇴원명령을 내리는 절자는 아래와 같다. (1) 퇴원명령을 내리는 절자는 아래와 같다. (1) 퇴원명령을 내리는 절자는 아래와 같다. (2) 교사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사안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 (3) 의 영어원회에서 최종 결의 (과반수이상)가 되면, 결의안에 동 의 의 영어원회에서 최종 결의 (과반수이상)가 되면, 결의안에 동

-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한다.
- 제18조(졸업) ① 유치워의 장은 워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따로 정한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수업료 기타의 비용징수

- 제19조(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타의 비용장수에 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다. ①본 유치원의 월아로부터 징수하는 도급하고 수어

제20조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원아에게 출석정지 또는 퇴원을 명 할 수 있다.

- 제21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반환) 원장은 수업료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으며, 그 기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하당 위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경제적 사성이 고라한 유아와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첫째 또는 지병 등으로 한하여 수업료를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 ④ 유치원 입학 후 3개월 미만의 장기결석 또는 해외체류 전반적 이 유치원 입학 후 3개월 미만의 장기결석 또는 해외체류 전반적 이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 평균 교육비의 3/1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다. ⑤ 문자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략하는 경우에는 전 출하는 달이 속하는 말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 이 당음, 감혼의, 어느, 한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바한 나요" 기
- 하다. ⑦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하다)에는 이미 남부한 수업로를 반환하다. 1.법령에 따라 (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 제10조(수업일수 등) ① 우리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 의 10분의 1
 - 2.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 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원은 교외체험학습은 최대30일 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한다.
- 제11조(수업운영방법) ①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교육과정 : 1일 4~5시간 이내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 2.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 과정운영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운영한다.(1일 7시간 이상)
 -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 6 장 방과후과정

제22조(학급 편성) 본원은 방과후 과정 7학급을 운영한다.

제23조(교육 일수) 방과후과정의 교육일수는 방과후과정 교육일 제13조(입학자격) 우리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수 210일에 기초하여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24조(원아정원) 방과후과정의 정원은 전라북도 교육청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25조(교직원 배치)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외에 보조 원 1인 이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2조(입학시기) 3월 초에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수가 미달일 경우 중도에 입학할 수 있다.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4조(재입학) 만 3,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5조(전학/편입학) 우리 유치원으로 전학이나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16조(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학

서 및 퇴학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 ①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청
-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 3. 유치원 전반적인 교과 운영에 필요이상의 요구나 간섭으 로 피해를 주는 학부모 유아
- 4. 수업료 장기체납(3개월 이상) 유아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제12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 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 하는 만 3, 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 기타의 비용징수

제 7 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제26조(목적)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 및 공식적인 의 견 교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경 교환 체보를 마련하기 위해 유지원 운형취원회를 구성하여 (1)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징 운영한다. 제27조(구성) 매년 초에 유치원 교원 대표3인 및 학부모 대표5인 (2)수업료이외의 기타 비용징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의원정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수는 6~8명으로 한다.

재29조(기능)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심의 기능을 가 진다. ①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⑤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⑥ 교원인사 자문에 관한 사항
- ⑦ 다면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교원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⑨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에 관한 사항
- ⑩ 물품선정에 관한 사항(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심의)
- ⑪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⑩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⑬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⑭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B)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수업률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타의 비용징 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철차 다.

료이었<mark>의</mark> 기타 비용징수는 관항목은 수업료, 특별활동비, 욹욹빈(현장 체험비), 간식 등으로 나뉘어 교육비 산출이

차량운영비(현장 체험비), 간식 등으로 나뉘어 교육비 산술이 이루어진다. ③는 전반적이 우치원을 미만의 장기결석 또는 해외 체류 시에 은 전반적이 우치원을 미만의 장기결석 또는 해외 체류 시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 평균 교육비의 3/1 해당하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교육비 납입금의 관항목 중에서 전체 공통비인 차량운영비(현장 체험비) 간식비는 이용하지 않아도 유치원 전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원아에게 출석정지 또는 퇴원을 명 할 수 있다.

⑦다음 각호의 어느 혀 한다.)에는 이미 납부1.법령에 따라 (재입학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8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

제 8장 교직원 조직

제30조 (정원) 본원의 교직원 정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ſ	구분	원장	원감	교사	보조	조리사	환경	차량
	ㅜ굔	26	26	TI-V	교사	포니시	관리	기사
ſ	정원	1	1	9	1	2	2	2

제31조(교직원 보수) 본원의 교직원 보수는 해당 학년도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덕일성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은 해당 년도 예산에 책정된 급액으로 한다.

2. 보수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 조정

현 행	개정안
제 4 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연봉 {(월급여 × 12) + 정기 상여금 } 2. 연봉 외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 기타수당)	4조(연봉체계) 본원 연봉제 체계이며 연봉제는 연봉과 그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제 12조(연 봉) 연봉은 본 규정 제13조의 의거 매년 결정한다.

3.유치원 운영 위원회 규정 조정 및 운영위원회 정수 재구성

학부모 운영위원회 정수를 학부모 위원 5명 교원위원3명으로 구성한다.

위구도 판성하면의 성구를 위구도 하면 Jd 프런하면Jd으로 구성인데.					
현 행	개정안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교원인사 자문에 관한 사항 7. 다면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원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9.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에 관한 사항 10.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14.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사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3,14에 따르며 3월1일 현재 유아 수에 따라 100명 미만일 경우 학부모 위원 5명 교원위원 3명의로 구성하며 100명 이상일 경우 학부모 위원6명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학사 일정 조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여름방학(7월28일~8월9일), 겨울방학(12월28일 ~1월5일) 봄방학(2월 24일~28일)

5. 추가 의견 없음.